

제17장 경제협력

제1절 일반 규정

제17.1조 목적

1.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, 이 협정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.
2. 이 장의 협력은 다음의 목적을 추구한다.
 - 가. 양 당사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, 그리고
 - 나.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, 지속 가능한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것

제17.2조 방법 및 수단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 및 수단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. 이를 위하여,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고, 실현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 간 기존 양자 협력의 그 밖의 형태와의 상승효과를 발전시킨다.
2. 양 당사국 간 협력은 협력 관계의 수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기존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,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도구, 자원 및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행될 것이다.
3. 양 당사국은 사업의 선별, 개발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,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과 같은 수단 및 세부원칙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7.3조 분쟁해결의 비적용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 한다.

제17.4조 경제협력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제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2. 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,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.
3.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.
 - 가. 이 장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사업 이행의 진전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
 - 나. 이 장에 따른 협력 활동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, 그리고
 - 다. 양 당사국의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, 이 장의 운영과 그 목적의 적용 및 달성을 검토하는 것
4.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다른 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2절 농수산 협력

제17.5조 식량 안보

1. 쌍방무역과 투자가 장기적인 식량안보 달성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,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농업과 식품에 대한 생산적이며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2. 양 당사국은 G20, APEC, FAO 및 ASEAN 10+3와 같은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, 글로벌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.

제17.6조 수산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.
2. 수산 협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양 당사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¹ 강화 및 증대, 그리고
 - 나.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접근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어류 및 수산물의 건전한 교역 촉진²

¹ 한·중 어업공동위원회

² 구체적인 이행조치는 기존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이다.

3. 양 당사국은 기존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.

- 가.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 촉진
- 나. 더 많은 대화 및 정보교환 증진
- 다. 양 당사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역량 강화, 그리고
- 라. 각 당사국 내 수산물 소비 촉진

제17.7조 임업

1. 양 당사국은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견전한 무역이 양자 간 전략적 관계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며, 양 당사국 간 임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을 다음을 통하여 증진시킨다.

- 가.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
- 나. 합리적인 정당한 근거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, 임산물에 대하여 수출제한적인 조치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
- 다. 합법적인 출처로부터의 임산물의 무역 촉진, 그리고
- 라. 조림과 목재 가공산업을 포함하여 임업분야의 상호 투자의 증진과 촉진

2. 양 당사국은 임업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산림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지속 가능한 관리
- 나.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복원에 대한 협력
- 다. 불법 벌채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목재 합법성 검증에 관한 공통의 이해 촉진
- 라. 산림유전자원 저장 기술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
- 마. 관상용 식물, 나무 종자와 종자산업의 발전 증진, 그리고
- 바. 양 당사국에 의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임업 분야

3.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가. 상호 관심 분야에서 경험공유와 정보교환

- 나. 공동 포럼, 세미나, 심포지엄, 학회, 연구개발, 교육 및 훈련의 증진
- 다. 연구원, 기술자, 전문가 및 관리자의 교류, 그리고
- 라.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

제3절 산업 협력

제17.8조 철강 협력

1. 양 당사국은, 철강 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서, 이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증진한다.
2. 철강 산업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 - 가. 철강 시장에서의 국내 규제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양 당사국의 정보교환
 - 나.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국내 철강 시장에 관한 양 당사국의 정보교환, 그리고
 - 다. 철강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증진을 위한 협력

제17.9조 중소기업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2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련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설치된, 기존의 양자 중소기업 정책교류위원회 메커니즘의 활용을 포함하여 관련 민간 및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다.
3. 중소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 - 가.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간 투자 흐름을 촉진하는 것
 - 나. 무역 절차, 무역 진흥 네트워크, 공동 비즈니스 포럼, 사업 협력 수단 및 중소기업 무역업자를 위한 그 밖의 모든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
 - 다. 양 당사국의 중소기업 무역업자를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간 협력에 적합한 유망 분야를 모색하는 것
 - 라. 중소기업에 특히 중점을 둔, 기업의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공기관 간 경험의 교환을 증진하는 것, 그리고
 - 마. 민간 및 정부기관의 협력 및 영세기업과 관련된 정보교환을 통하여 영세기업의 경쟁

력을 제고하는 것

**제17.10조
정보 및 통신기술 협력**

1. 양 당사국은 정보 및 통신기술(이하 “ICT”라 한다)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의 ICT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ICT 및 ICT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2. ICT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 - 가. 양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력 증진
 - 나. ICT 관련 국제 전시 및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제고
 - 다. 그 밖의 적절한 협력활동의 수행, 그리고
 - 라. 국제 기준 관련 국제 기구에서의 상호 협력 및 지원
3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.
 - 가.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과학 및 기술 협력
 - 나. 정보기술단지의 연구개발 및 관리
 - 다.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개발
 - 라. 양 당사국이 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, 네트워크 및 통신의 연구개발 및 배치, 그리고
 - 마. 지능형 교통 시스템(ITS), 자동차 전자장치, 휴대 지능 단말기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의 주요 재료 및 장비와 같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

**제17.11조
섬유 협력**

1. 양 당사국은 섬유 산업 사슬에 있어서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다음의 협력을 증진한다.
2. 섬유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 - 가. 산업용 섬유, 기능성 섬유 직물, 세섬직물 및 편직물의 개발 및 적용
 - 나. 의류 및 패션 디자인,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의 협력 및 교환
 - 다. 표준화된 품질 시스템 인증 및 선진 관리 경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및 교환

- 라. 기술, 정보, 연구원,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, 그리고
 - 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
3. 양 당사국은,
- 가. 섬유 산업 사슬에 관여하는 관련 정부기관, 산업단체 및 기업을 통하여 섬유 협력을 증진한다. 그리고
 - 나. 공동 포럼, 세미나, 학회,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의 개최를 촉진한다.

제17.12조 접촉선

양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 협력 관련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.

- 가. 중국의 경우, 공업화신식화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- 나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

제4절 정부조달

제17.13조 목적

양 당사국은 각국의 경제에서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 활동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
제17.14조 투명성

양 당사국은 법을 공표하거나, 법,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과 양 당사국의 조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국제 협정을 달리 공개하도록 한다.

제17.15조 정보교환

- 1. 양 당사국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, 각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, 정부 조달 관련 각국의 법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.
- 2. 제1항의 정보교환은 다음의 정부 당국을 통하여 촉진된다.

- 가. 중국의 경우, 재정부, 그리고
- 나. 한국의 경우,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또는 각각의 승계기관

제17.16조 접촉선

양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이 정부조달에 관한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.

- 가. 중국의 경우, 재정부, 그리고
- 나. 한국의 경우,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또는 각각의 승계기관

제17.17조 추가 교섭

양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 당사국 간 정부조달 협정을 맺기 위하여, 중국의 「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」 가입 교섭이 완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조달 관련 교섭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.

제5절 다른 협력 분야

제17.18조 에너지 및 자원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더 강력하고,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.
2. 양 당사국은
 - 가.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, 공공기관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을 통하여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한다.
 - 나.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양자관계를 위하여,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투자를 포함한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.
 - 다. 협정 및 이미 조직된 협력체와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한다. 그리고
 - 라. 고위급 세미나 및 그 밖의 형태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원의 포괄적 이용에 관한 정책 대화를 증진하고, 프로젝트, 워크샵, 훈련, 현장방문 및 그 밖의 적절한 형태를 통한 환경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연구원,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고, 또한 공동 포럼, 세미나, 학술토론회, 학회,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을 증진한다.

제17.19조 과학 및 기술 협력

1. 양 당사국은 각국 경제에서의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경우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.

- 가. 필요한 경우 설비 공유를 포함한 공동 연구개발
- 나. 과학자, 연구원, 연구장비기사,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
- 다. 해당 활동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포함하여, 세미나, 심포지엄, 학회 및 그 밖의 과학 및 기술 관련 회의의 공동 주최
- 라.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관행, 정책, 법,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
- 마. 공동의 과학 및 기술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,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에 있어서의 협력, 그리고
- 바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

제17.20조 해상 운송 협력

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 있어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.

- 가. 해상 운송 및 물류 서비스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설치
- 나. 항만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 및 기술적 협력 마련, 그리고
- 다. 해상교통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, 해상 운송과 관련된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활동 마련

제17.21조 관광 협력

양 당사국은 관광이 양국의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,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.

- 가. 각 당사국으로의 입국 방문자 증가를 위하여 관광 개발 및 증진에 대한 공동 연구를

수행할 가능성 모색

- 나. 양 당사국의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이 관광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
- 다.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 및 기관 간 워크샵 및 세미나를 통하여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에 있어서의 협력
- 라. 양 당사국 영역에서의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
- 마.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, 홍보자료,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, 그리고
- 바.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

제17.22조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

- 1.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, 중국의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, 현 시범 사업 계획 하에서 아웃바운드 관광 운영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.³
- 2. 한국 관광회사의 지원과 관련하여, 중국은 지원한 한국 회사가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, 한국 관광 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.
- 3.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중국의 국가여유국은 이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채널을 설립할 것이다.

제17.23조 문화 협력

- 1.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.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, 양 당사국은 문화 협력을 위하여 이미 발효 중인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존중한다.
- 2.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규와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서의 자국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, 주변 환경과 문화 경관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 관행의 교환을 장려한다.
- 3.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협력 메커니즘 하에서 양국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 거래를 확인하고, 원상태로 복원하며,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4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,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.

³ 현 시범 사업 계획이란 중국 상무부 및 국가여유국에 의하여 공표된 법령 제33호에 따라 2010년부터 중국 국가여유국에 의하여 운영되는 계획을 말하며, 이 계획에 따라 외국인 투자 관광회사 네 곳이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허가를 받았다.

**제17.24조
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협력**

1. 양 당사국은 공중보건 증진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.
2.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가. 다음에 관한 정보교환

- 1) 입법 진전 및 집행을 포함한 정책, 그리고
- 2)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학회, 세미나, 워크샵, 전시회,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

나. 다음에 관한 관련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

- 1) 연구원, 학생 및 관련 산업 관계자의 교류
- 2)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이들의 상업화
- 3) 제품 품질 개선, 공급망 연계, 기술 교류 등, 그리고
- 4) 상호 투자 기회의 증진 및 촉진

**제17.25조
지방 경제 협력**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방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,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을 확인함으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다. 그러한 협력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 후 웨이하이 및 인천의 시정부에 의하여 논의된다.
2. 시범 협력 사업은 이 협정 체제 하에서 지방 경제 협력을 위한 모범적이고 선두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, 무역, 투자, 서비스, 산업 협력 등의 분야를 포함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고 수행할 것이다.
3. 양 당사국은 시범 협력 사업의 결과를 검토한 후, 지방 경제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.

**제17.26조
한국-중국 산업단지/공업원**

1. 양 당사국은 지식 공유, 정보교환 및 투자 증진을 포함하여,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

단지/공업원의 설립,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될 산업 단지/공업원에 대한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

제17.27조
접촉선

양 당사국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, 제17.22조의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을 제외하고, 그 밖의 협력 분야 관련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.

가. 중국의 경우, 상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나. 한국의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